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조영현 실장(금융제도연구실, 3775-9032)
작성자 박희우 연구위원(3775-9046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9. 1(목) 조건부터
배포 2022. 8. 31(수)
매수 총 5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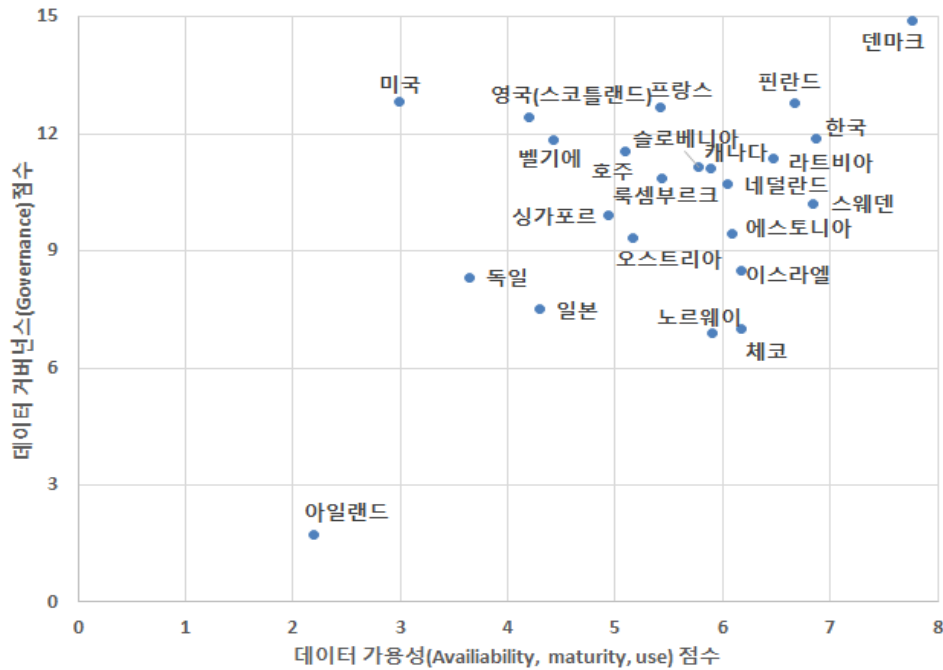
보험연구원, 『보험업의 데이터 결합·활용 사례 및 시사점: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』 연구보고서 발간

“국내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 인프라와 제도가 우수함에도 활성화 수준이 미흡하므로,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”

-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은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·활용 사례를 소개하고, 공공의 료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『보험업의 데이터 결합·활용 사례 및 시사점: 의료데 이터를 중심으로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보험업의 데이터 활용) 보험업은 사회·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 로 분석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산업임
- (외부데이터 결합·활용 해외 선진 사례)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언더라이팅 과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 - LexisNexis는 신용정보, 공공기록, 의료데이터 등을 결합·활용하는 모델인 Risk Classifier with Medical Data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사망률 측정을 고도화함
 - Blue Cross and Blue Shield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성 진통제(오피오이드) 남용을 예방하고 그 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를 거둠

- Tesco는 소비자의 **쇼핑 정보**를 반영하여 자동차 **보험료**를 **할인**함
- **(국내 제도 개정)**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**데이터 3법**을 개정하였으며, 과학적 연구* 시에 **가명정보의 활용 및 결합**이 가능하게 됨
 - *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임
- **(공공의료데이터 수요 요인)** 제도 개정에 따른 **외부데이터 결합·활용**을 앞두고 국내 보험회사의 **공공의료데이터**에 대한 수요가 높음
 - **인보험**이 국내 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데이터에 대한 보험회사의 수요가 높으며, 공공의료데이터는 보험회사 경험통계로는 산출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자·유병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
 - **헬스케어 서비스** 고도화에 공공의료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음
 - 단일체계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양질의 진료기록이 축적되고 있으며, 개정 데이터 3법, 공공데이터법 등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
- **(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)**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이차적 활용을 위한 규제가 엄격하고,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인프라 및 제도적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
- **(우수한 환경)**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데이터는 이차적 활용을 위한 **가용성(인프라)**과 **거버넌스(제도)**가 세계적으로 **우수한 수준**임
 -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**적시성이 높고**, 단일식별자가 존재하여 **연계성이 우수**하며, **비식별 조치**를 충분히 취해서 재식별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음

<그림 1> 국가별 공공의료데이터 가용성 및 거버넌스 점수 분포



자료: Jillian Oderkirk(2021), "Survey results: National health data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",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. 127

- (제한적 활용) 데이터 공유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의 이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리기업의 이용자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
- 법적으로는 이차적 활용이 가능함에도 공공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임
- 보험시장에서도 신뢰와 협력의 부재가 재현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식별을 통해 개인이 특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함

〈표 1〉 공공의료데이터 거버넌스 상위 국가의 주요 항목별 점수

국가	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률	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	비식별 조치	재식별 가능성 테스트	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공유	비영리 연구기관과의 데이터 공유	영리기업과의 데이터 공유	거버넌스 종합 점수
호주	67%	100%	100%	0%	78%	89%	89%	11.56
벨기에	100%	100%	100%	43%	57%	100%	0%	11.86
덴마크	100%	100%	100%	90%	100%	100%	100%	14.9
핀란드	100%	100%	100%	0%	100%	100%	100%	12.78
프랑스	78%	100%	100%	78%	100%	100%	78%	12.67
한국	100%	100%	100%	89%	89%	89%	0%	11.89
영국 (스코틀랜드)	89%	89%	89%	89%	89%	89%	89%	12.44
미국	100%	100%	100%	100%	83%	100%	100%	12.83

주: 1) 거버넌스 종합 점수 상위 8개국의 주요 7개 거버넌스 항목(총 15개)에 대한 점수이며, 점수는 각 국가 주요 공공의료데이터(최대 10개)에 대해 각 거버넌스 항목의 충족 여부 비율임

2) 거버넌스 종합 점수는 15개 모든 거버넌스 항목에 대한 점수(100%는 1점)의 합계임

자료: Jillian Oderkirk(2021), "Survey results: National health data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",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. 127

○ (핀란드, 영국 사례) 인프라 및 제도 마련이 진전된 유럽 국가에서도 사회적 신뢰도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의료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여부가 다름

- 핀란드는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핀젠프로젝트*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헬스케어 산업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발생함

* 핀젠프로젝트는 핀란드 국민들의 유전정보와 진료·처방 등 의료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임

- 반면, 영국은 NHS(국가의료서비스)가 전 국민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대규모 케어닷 프로젝트*가 전면 중단됨

* 케어닷 프로젝트는 핀젠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유전정보와 의료데이터를 결합하고 개방하여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임

○ (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) 한국은 빠른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음

- 고령화로 인해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기에 고령자·유병자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-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데이터 가용성(인프라)과 거버넌스(제도적 기반)가 갖추어 졌지만,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실질적 활용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보임
- (시사점)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방안과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
-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와 개인정보보호 장치 및 제재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·홍보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이해가 높아진다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음
 - 공공의료데이터의 정보주체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익을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(결론)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도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
- 또한 보험회사 등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

첨부: 연구보고서 『보험업의 데이터 결합·활용 사례 및 시사점: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